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8호, 제85조제2호 다목, 제86조제7항 및 제87조제5항에 따라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이 사전 계약하여 발송인을 방문·접수하는 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1일

우정사업본부장

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

1. 계약대상

가. 계약대상관서

1)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4, 5급 관서), 우편집중국(물류센터 포함)
2) 6급 이하 우체국(별정국 포함) 중 계약소포 접수에 필요한 인력·차량 등을 구비하고 총괄우체국장이 승인한 우체국

나. 계약대상우편물

1) 월평균 1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2) 연합체발송으로서 전체 발송물량이 월평균 500통 이상 또는 계약자(계약업체)별 월평균 1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3) 다수지발송으로서 전체 발송물량이 월평균 500통 이상이고 발송지별 월평균 1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4) 명절, 농산물 수확기 등 특정기간(6개월 이내) 중 월평균 1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5) 한시적(1개월 이내 : 영업일 기준)으로 5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다. 추가감액대상우편물

1) 우편물 소통 협조 고객
   - 우체국택배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경우
   - 계약자(계약업체)가 우편관서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2) 신규고객이 월평균 5,000통 이상 발송하는 경우
3) 1년 이상 장기이용 고객이 월평균 100통 이상 발송하는 경우
4) 초소형택배(부피 2,500㎤ 이내)를 월평균 1,000통 이상 발송하는 경우
5) 우편물 발송이 2호편 이상인 계약관서에 12시(24시간 기준)까지 접수되고, 1호편에 발송하는 경우(1호편만 있는 관서는 제외)
6) 우정사업본부장 및 지방우정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2. 감액범위

가. 기본 감액

1) 중량 2kg, 크기(가로+세로+높이) 60cm까지 방문접수(동일지역 요금기준) 요금의 46% 미만
2) 중량 5kg, 크기(가로+세로+높이) 80cm까지 방문접수(동일지역 요금기준) 요금의 51% 미만
3) 중량 10kg, 크기(가로+세로+높이) 120cm까지 방문접수(동일지역 요금기준) 요금의 51% 미만
4) 중량 20kg, 크기(가로+세로+높이) 140cm까지 방문접수(동일지역 요금기준) 요금의 36% 미만
5) 중량 30kg, 크기(가로+세로+높이) 160cm까지 방문접수(동일지역 요금기준) 요금의 25% 미만

나. 계약요금 감액기준표

구분	감액요건	감액요금	
1. 우편물 소통 협조 고객	가. 우체국택배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	200원이하	
	나. 우체국까지 운송(계약관서)	100원이하	
	다. 집중국(물류센터 포함)까지 운송(계약관서)	200원이하	
2. 신규이용고객	라. 1년 이내		
	·월평균 5,000통 이상 발송	50원 이하	
	·월평균 10,000통 이상 발송	100원 이하	
	·월평균 30,000통 이상 발송	200원 이하	
3. 장기이용고객	마.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적용	1년 이상	3년 이상
	·월평균 100통 이상 발송	100원이하	150원이하
	·월평균 10,000통 이상 발송	150원이하	200원이하
	·월평균 30,000통 이상 발송	250원이하	300원이하
		* 단, 3년 이상 감액여부는 청에서 승인	
4. 초소형 택배	바. 중량이 2kg 이하이고 크기가 2,500㎤이하		
	·월평균 1,000통 이상 발송	100원 이하	
	·월평균 10,000통 이상 발송	200원 이하	

구분	감액요건	감액요금
5. 지방청장 특별 승인	사. 오전접수 할인 아. 특정요금 할인	100원 이하 100원 이하
6. 추가감액 한도액		1년 미만 : 500원 1년 이상 : 550원 3년 이상 : 600원
7. 초소형 계약요금 한도액		10,000통 이상 : 1,700원

※ 초소형택배 10,000통 이상을 제외한 최저 계약요금은 1,800원으로 함.

※ 우체국택배 방문접수는 우체국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3. 기타사항

가. 소포우편물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소포우편물 배달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우편물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2-57호(2012.10.24.)는 폐지한다.
2.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 우체국택배 계약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